

주민세(종업원분) ([기한 내/[기한 후)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(3쪽중 제1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관리번호
신고인 (납세자)	① 사업소명(상호)	
	② 성명(법인명)	③ 주민(법인)등록번호
	④ 본점 소재지	⑥ 사업자등록번호
	⑤ 사업소(과세대상) 소재지	
	⑦ 전화번호	⑧ FAX번호

년 월분	⑨ 종업원 수	⑩ 최근 1년간 종업원	과세표준		
신고납부 (급여지급일:	(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)	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(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)	⑪ 급여총액	⑫ 과세제외급여액	⑬ 과세급여총액
년 월 일)	인	원	원	원	원

「지방세법」 제84조의5에 따른 과세표준 공제액

⑭ 직전 연도 월평균 종업원수 (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)	⑮ 신고월의 월 적용급여액 (⑬ / ⑨)	⑯ 과세표준 공제액 (⑮ × (⑨ - ⑭))
인	원	원

납부할 세액	⑰ 산출과표 (⑬-⑯)	원	⑱ 산출세액 (⑰×0.5%)	원	무신고가산세	원
					과소신고가산세	원
					납부지연가산세	원
					⑲ 가산세 합계	원
	⑳ 신고세액합계 (⑱+⑲)		원			

「지방세법」 제8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납세자)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접수증

(접수번호)

성명(법인명)	주 소	접수자	접수일
년 주민세(종업원분) 신고서 접수증입니다.		성명	(서명 또는 인)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

급여 총괄표

사업소 인원 (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)	계	상시고용종업원	수시고용종업원	비고

과 세 대 상		비과세대상		비 고
구 분	급여액	구 분	급여액	
기본급		기본급		
수 당		수 당		
상여금		상여금		
기 타		기 타		
합 계		합 계		

[illegible][illegible]

작성방법

□ 신고인(납세자)란

- ① **사업소명(상호)**: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, 「법인세법」 제111조, 「소득세법」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등록된 상호명을,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부관리명칭을 사업소명으로 적습니다.
- ※ 사업소: 「지방세법」 제74조제4호에 따라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.
- ② **성명(법인명)**: 개인의 경우 성명,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명을 적습니다.
- ③ **주민(법인)등록번호**: 개인은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,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- ④ **본점 소재지**: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적습니다.
- ⑤ **사업소(과세대상) 소재지**: 신고하려는 사업소의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주소를 적습니다.
- ⑥ **사업자등록번호**: 해당 사업소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,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 칸으로 둡니다.
- ⑦ **전화번호**: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.
- ※ 기재착오, 계산착오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.
- ⑧ **FAX번호**: 수신이 가능한 FAX번호를 기재하되, 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.

□ 신고납부란

- ⑨ **종업원 수**: 「지방세법 시행규칙」 제38조의2에 따른 월 통상인원[해당 월의 상시고용 종업원수 + (해당 월의 수시고용 종업원의 연인원/해당 월의 일수)]을 산출하여 기재합니다.
- ※ 수시고용 종업원의 연인원은 수시고용 종업원이 근무한 일수의 합계를 의미합니다.
(예시) 수시고용 종업원 3명이 각 10일, 15일, 20일씩 근무한 경우: $(10 \times 1 + 15 \times 1 + 20 \times 1) = 45$
- ⑩ **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**: 신고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12로 나눈 값을 기재합니다. 이 경우 개업 또는 휴·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수는 제외합니다.
- ⑪ **급여총액**: 신고월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총액을 적습니다.
- ⑫ **과세제외급여액**: 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액을 적습니다.
- ⑬ **과세급여총액**: 급여총액에서 과세제외급여액을 차감한 금액(⑪-⑫)을 적습니다.

□ 「지방세법」 제84조의5에 따른 과세표준 공제액란

- ⑭ **직전 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**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기재하되, 그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기재합니다.
- ⑮ **신고월의 월 적용급여액**: 과세급여총액(⑬)을 종업원 수(⑨)으로 나눈 값을 적습니다.
- ⑯ **과세표준 공제액**: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달부터 1년 동안(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달만 해당합니다)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.
- 과세표준 공제액 = 신고월의 월 적용급여액(⑮) × [신고월의 종업원 수(⑨) - 직전 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(⑭)]
1.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: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하여야 하는 달
 2. 해당 월의 1년 전(해당 월의 과거 1년 내에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에는 신설한 달을 말합니다)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(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1회 이상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의 경우는 제외함): 해당 월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

□ 납부할 세액란

- ⑰ **산출과표**: 과세급여총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액수(⑬-⑯)를 적습니다.
- ⑱ **산출세액**: 산출과표(⑰)에 「지방세법」 제84조의3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.
- ⑲ **가산세 합계**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3조의 무신고 가산세, 같은 법 제54조의 과소신고가산세, 같은 법 제55조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출하여 합계금액을 적습니다.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.
- ⑳ **신고세액 합계**: 신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합계(⑱+⑲)를 적습니다.

□ 문의사항은 시(군·구) 과(☎ -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